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9. 3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9월 6일
- 회부일자 : 2000년 9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9. 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

가.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및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281명 ⇒ 2,283명(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8명 ⇒ 1,370명(증 2명)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정원 -- 820명(변동 없음)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의 정원 ----- 52명(변동 없음)
- 증원하려는 내용 :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규칙으로 정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업무를 추진할 한시정원(2002년 6월 30일까지)으로 2명(지방행정 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이 증원되어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281명”을 “2,28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68명”을 “1,370명”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52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2,360”을 “2,362”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중 “1,444”을 “1,446”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원 2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281</u>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68</u>명 2 내지 4 (생략)</p> <p>부 칙(1999.11.23 조례 제2524호)</p> <p>제1조 (생략) 제2조 (생략)</p> <p>[표1] (생략)</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6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44</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생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생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생략)</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60</u>	1.집행기관의 정원	<u>1,444</u>	2.(생략)		3.(생략)		4.(생략)		<p>제2조 (정원의 총수)..... .....<u>2,283</u>명.....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70</u>명 2 내지 4 (현행과 같음)</p> <p>부 칙(1999.11.23 조례 제2524호)</p> <p>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p> <p>[표1] (현행과 같음)</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62</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46</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62</u>	1.집행기관의 정원	<u>1,446</u>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60</u>																								
1.집행기관의 정원	<u>1,444</u>																								
2.(생략)																									
3.(생략)																									
4.(생략)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62</u>																								
1.집행기관의 정원	<u>1,446</u>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 근 거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0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